

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

창 원 시 의 회

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의안 번호	67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7.

발 의 의 원 : 홍용채 · 변보미 · 박현재 · 서명일 · 남재욱
남호준 · 박영주 · 이우완 · 감규상 · 김인애
의원(10명)

1. 제안 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 및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74조에 따라 제155회 창원시의회(제1차 정례회)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.

2. 주요 내용

- 출석 기간 : 제155회 창원시의회(제1차 정례회) 시정질문 기간
- 출석 대상 : 시장 및 「창원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, 「창원시의회 출석·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임직원
- 출석 장소 : 창원시의회 본회의장
- 출석 이유 :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

3. 관련 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
-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74조
- 「창원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
- 「창원시의회 출석·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」 제2조

【 관련 법 규 】

□ 지방자치법

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

제74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·답변해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□ 창원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
제2조(범위) 창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부시장
2.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·국장, 담당관, 과장급
3.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에서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
4.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 및 구청의 담당관,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

□ 창원시의회 출석·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

제2조(범위)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창원시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창원시 산하 지방공사·공단인 팀장급 이상 임직원
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창원시가 출자·출연한 기관의 팀장급 이상의 임직원